

직제 및 인사규정

제정 1984. 8. 29	규정 제 1호	개정 2001. 3. 12	규정 제106호
개정 1985. 4. 11	규정 제 5호	개정 2002. 3. 6	규정 제113호
개정 1986. 5. 21	규정 제14호	개정 2002. 4. 29	규정 제121호
개정 1986. 8. 1	규정 제23호	개정 2002. 12. 5	규정 제122호
개정 1986. 8. 26	규정 제26호	개정 2003. 4. 1	규정 제130호
개정 1986. 11. 18	규정 제28호	개정 2003. 12. 5	규정 제131호
개정 1988. 2. 29	규정 제33호	개정 2004. 4. 23	규정 제133호
개정 1989. 11. 9	규정 제36호	개정 2005. 5. 19	규정 제141호
개정 1990. 3. 1	규정 제37호	개정 2005. 11. 28	규정 제144호
개정 1991. 1. 7	규정 제40호	개정 2005. 12. 30	규정 제145호
개정 1992. 1. 8	규정 제42호	개정 2006. 12. 29	규정 제148호
개정 1992. 2. 1	규정 제44호	개정 2007. 2. 28	규정 제154호
개정 1992. 5. 2	규정 제46호	개정 2007. 8. 16	규정 제155호
개정 1992. 10. 21	규정 제49호	개정 2007. 8. 16	규정 제155호
개정 1993. 1. 27	규정 제50호	개정 2007. 12. 7	규정 제156호
개정 1993. 5. 17	규정 제54호	개정 2008. 2. 28	규정 제160호
개정 1993. 12. 31	규정 제55호	개정 2008. 5. 13	규정 제162호
개정 1995. 3. 6	규정 제61호	개정 2008. 12. 18	규정 제170호
개정 1996. 3. 7	규정 제65호	개정 2009. 2. 27	규정 제171호
개정 1996. 12. 2	규정 제67호	개정 2009. 10. 21	규정 제174호
개정 1997. 3. 1	규정 제72호	개정 2009. 12. 22	규정 제178호
개정 1997. 10. 1	규정 제80호	개정 2010. 1. 29	규정 제181호
개정 1998. 1. 1	규정 제82호	개정 2010. 4. 27	규정 제182호
개정 1998. 2. 2	규정 제84호	개정 2013. 4. 2	규정 제195호
개정 1998. 4. 10	규정 제86호	개정 2013. 5. 23	규정 제196호
개정 1998. 5. 26	규정 제87호	개정 2014. 11. 27	규정 제198호
개정 1998. 10. 24	규정 제88호	개정 2014. 12. 18	규정 제199호
개정 1998. 12. 30	규정 제90호	개정 2015. 2. 24	규정 제203호
개정 1999. 3. 31	규정 제93호	개정 2015. 11. 5	규정 제205호
개정 1999. 10. 1	규정 제95호	개정 2016. 1. 1	규정 제206호
개정 2000. 1. 1	규정 제98호	개정 2016. 10. 26	규정 제209호
개정 2000. 11. 16	규정 제101호	개정 2017. 2. 23	규정 제212호
개정 2000. 11. 16	규정 제101호	개정 2017. 8. 3	규정 제213호
개정 2000. 12. 30	규정 제104호	개정 2018. 4. 18	규정 제224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업무의 분담을 규정하고 직원에게 적용할 인사관리의 기준을 정하여 연구원의 능률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5. 4.11)

제1조의 2(직원의 구분) ① 직원은 연구직, 전문직, 관리직 및 투자분석직으로 구분한다.(개정 04.4.23, 15.2.24)

② “연구직”이라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계약에 따라 임용된 직원으로 이는 일반연구직원과 지방행정경력이 있는 경력연구직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89.11.9, 92.2.1, 00.1.1)

1. 선임연구위원
2. 연구위원
3. 수석연구원
4. 연구원

③ “관리직”이라 함은 경력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된 직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관리직도 정원의 범위안에서 원장과 피임용자 또는 인력파견기관과의 고용계약에 의해 임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89.11.9, 99.3.31)

1. 사무원
2. 전산원
3. 사서원
4. (본조신설 86.8.1)<삭제09.2.27>

④ ‘전문직’이라 함은 경력과 자격에 의하여 계약에 따라 임용된 직원으로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본항신설 04.4.23)

1. ‘가’급
2. ‘나’급
3. ‘다’급

⑤ ‘투자분석직’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계약에 따라 임용된 직원으로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신설 15.2.24, 개정 18.4.18)

1. 선임전문위원
2. 전문위원
3. 전문분석원
4. 분석원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별도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임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직 제

제3조 (조직) ① 연구원에는 원장을 보좌하여 정책개발 등 연구업무를 총괄하는 부원장과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를 둔다. 또한 전문분야별 업무수행을 위해 부원장 산하에는 연구기획실, 자치행정연구실, 지방재정연구실, 지역발전연구실을 두고,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는 기획총괄부, 재정투자조사부, 재정투자평가부를 둔다.(개정15.2.24)

② 연구원의 연구지원업무를 위해 원장 직속으로 행정국을 둔다.(개정15.2.24)

③ 각종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부원장 직속 및 실·부·국 산하에 하부 조직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89.11.9, 91.1.7, 92.2.1, 93.1.27, 93.12.31, 95.3.6, 96.3.7, 97.3.1, 98.5.26, 98.10.24, 00.1.1, 00.12.30, 01.3.12, 02.12.5, 03.12.5, 05.12.30, 08.2.28, 09.12.12, 10.01.29, 13.5.23, 15.2.24)

④ (개정 85.4.11, 89.11.9, 91.1.7, 92.2.1, 92.10.21, 93.12.31, 96.3.7, 00.1.1, 00.11.16, 00.12.30, 01.3.12, 02.3.6, 02.12.5, 03.12.5, 05.12.30, 삭제 08.2.28)

⑤ (개정 85.4.11, 92.1.8, 92.2.1, 97.10.1, 00.12.30, 02.3.6, 02.12.5, 06.12.29, 삭제 08.2.28)

⑥ 연구원은 필요에 따라 겸임연구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임용자격의 기준은 제10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개정 86.8.26)

제4조 (기구, 직종 및 정원) 연구원의 기구, 직종 및 직종별 정원은 <별표 2,3>과 같다.(개정 85.4.11, 86.8.1, 86.11.18, 88.2.29, 89.11.9, 91.1.7, 92.2.1, 92.10.21, 93.1.27, 93.12.31, 95.3.6, 96.3.7, 97.3.1, 98.5.26, 98.10.24, 98.12.30, 00.12.30, 02.3.6, 14.12.18, 18.4.18)

제5조 (직무대행) 원장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원장, 연구기획실장, 행정국장, 자치행정연구실장, 지방재정연구실장, 지역발전연구실장순으로 대행한다.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대행한다. (개정 85. 4.11, 93.12.31, 96. 3. 7, 98.2.2, 00.1.1, 01.3.12, 02.3.6, 02.4.29, 02.12.5, 03.12.5, 05.12.30, 08.2.28, 09.12.22, 10.4.27, 13.5.23)

제6조 (업무분장) ① 각 부서의 세부업무분장은 별도의 규칙에 의한다. (개정 89.11.9, 91.1.7, 92.2.1, 93.1.27, 93.12.31, 95.3.6, 96.3.7, 98.5.26, 98.10.24, 00.12.30, 01.3.12, 02.12.5, 03.12.5, 05.12.30, 08.2.28)

1. ~ 4. (삭제 00.12.30)

5. <삭제 98.5.26>

6. <삭제 96.3.7>

② (개정 2000.12.30, 02.12.5, 삭제 08.2.28)

제7조 (사무국) (개정 89.11.9, 92.2.1, 삭제 00.12.30)

제3장 임 용

제8조 (임용의 원칙) ① 직원의 채용은 시험성적, 연구실적, 근무성적, 특수자격(면허 등)과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개정 89.11.9).

② 제1조의 2 제2항에 의한 경력연구직원은 연구직 정원의 4분의 1을 초과임용하지 못한다(신설 89.11.9).

제9조 (임용의 방법) 직원의 채용은 공개 또는 특별채용에 의하며 채용시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임용자격의 기준) ① 연구직의 임용자격기준은 다음에 의한다.

1. 선임연구위원

가. 연구위원의 임용자격이 있는 자로서 4년 이상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개정 93.12.31, 00.1.1)

나. 지방행정경력 20년 이상으로서 3급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신설

89.11.9, 92.2.1)

다. 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본목신설 85. 4.11, 개정 86.8.1, 89.11.9, 00.1.1)

2. 연구위원

가. 4년제 대학의 해당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신설 92.2.1)

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4년 이상 관련 전문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개정 85.4.11, 92.2.1, 93.12.31)

다. 지방행정경력 20년 이상으로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신설 89.11.9, 92.2.1)

라. 연구원에서 수석연구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개정 85.4.11, 86.8.1, 89.11.9, 92.2.1, 00.1.1)

3. 수석연구원

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분야에 대한 우수한 연구가 기대되는 자 (신설 86.8.1)

나. 지방행정경력 15년 이상으로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개정 85.4.11, 86.8.1, 89.11.9, 92.2.1)

다. 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개정 85.4.11, 86.8.1)

4. 연구원

가.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분야에 대한 우수한 연구가 기대되는 자(개정 86.8.1, 89.11.9)

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전문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자(개정 86.8.1)

다. 지방행정경력 10년 이상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개정 86.8.1, 89.11.9, 92.2.1)

② 관리직 임용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원

가. (개정 02.12.5, 08.2.28, 삭제 09.2.27)

나. 1 급

(1) 대학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관련업무에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개정 02.3.6)

(2) 연구원의 2급 사무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자

(3)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관련업무 경력을 가진 자 (개정 92.2.1)

(4) 상기 각목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본목 전문개정 85.4.11, 개정 86.8.1)

다. 2 급

(1) 대학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관련업무에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개정 02.3.6)

(2) 연구원의 3급 사무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자

(3) 5년 이상 행정경력을 가진 6급 이상 공무원(신설 92.2.1)

(4) 상기 각목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본목신설 86.8.1)

라. 3 급

(1) 대학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5년 이상 관련경력을 가진 자(개정 02.3.6)

- (2) 연구원의 4급 사무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자
- (3) 7급이상 공무원(신설 92.2.1)
- (4) 상기 각목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본목신설 86.8.1)

마. 4 급

- (1) 대학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전문대학(2년)을 졸업하고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개정 02.3.6)
- (2) 9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신설 92.2.1)
- (3) 상기 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본목신설 86.8.1)

바. 5 급 - 가 (신설 09.2.27)

- (1) 고등학교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2) 10급 이상의 기능직 공무원으로 3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3) 당해 기술업무에 관한 면허 또는 특수자격을 가진 자

사. 5 급 - 나 (신설 09.2.27)

- (1) 고등학교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2) 10급 이상의 기능직 공무원으로 1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3) 당해 기술업무에 관한 면허 또는 특수자격을 가진 자

2. 전산원

가. 2 급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소지자
- (2) 연구원의 3급 전산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실적이 우수한 자
- (3)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6급 이상 전산공무원(신설 92.2.1)
- (4) 상기 각목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3 급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처리기사 1급 소지자로 전공분야에 2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 (2) 연구원에서 4급전산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
- (3) 7급 이상 전산공무원(신설 92.2.1)
- (4) 상기 각목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4 급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처리기사 2급 소지자로 전공분야에 2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 (2) 9급 이상 전산공무원(신설 92.2.1)
- (3) 상기 각목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신설 89.11.9)

3. 사서원

가. 2 급

- (1) 도서관학 및 정보학을 전공한 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분야에 4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2)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분야에 6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3) 연구원의 3급 사서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자
- (4)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6급 사서공무원(신설 92. 2. 1)
- (5) 상기 각목과 동등이상 자격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3 급

- (1) 도서관학 및 정보학을 전공한 자로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2년 이상 관련경력을 가진 자
- (2) 연구원의 4급 사서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자
- (3) 7급 이상 사서공무원(신설 92.2.1)
- (4) 상기 각목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4 급

- (1) 준사서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관련경력을 가진 자
- (2) 9급 이상 사서공무원(신설 92.2.1)
- (3) 상기 목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본목신설 86.8.1)

① 4. (삭제 09.2.27)

- (1) (삭제 09.2.27)
- (2) (보호전문개정 86.8.1, 삭제 09.2.27))

③ 전문직의 임용자격기준은 다음에 의한다. (본항신설 04.4.23)

1. 가급

- 가. 채용예정직무분야 관련 석사학위 취득 후 9년이상 당해분야 경력이 있는 자
- 나. 채용예정직무분야 관련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이상 당해분야 경력이 있는 자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
-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 기사자격 취득 후 9년 이상 당해분야 경력이 있는 자.
- 마. (사)한국번역가협회 번역능력인정시험 1급자격(직업번역능력)을 취득한 자
- 바. 공인회계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사. 연구원에서 전문직'나'급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
- 아.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나급

- 가. 채용예정직무분야 관련 석사학위 취득 후 6년이상 당해분야 경력이 있는 자
- 나. 채용예정직무분야 관련 학사학위 취득 후 9년이상 당해분야 경력이 있는 자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 기사자격 취득 후 6년 이상 당해분야 경력이 있는 자
- 라. (사)한국번역가협회 번역능력인정시험 2급자격(전문분야지식, 어학능력 소지여부)을 취득한 자
- 마. 공인회계사자격을 취득한 자(시험합격자)
- 바. 연구원에서 전문직'다'급으로 4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
- 사. 기타 위 각 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다급

- 가. 채용예정직무분야 관련 석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당해분야 경력이 있는 자
- 나. 채용예정직무분야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 후 6년이상 당해분야 경력이 있는 자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 기사자격 취득 후 3년이상 당해분야 경력이 있는 자
-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7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마. (사)한국번역가협회 번역능력인정시험 3급자격(기업직무 및 실용문번역능력소지)을 취득한 자
- 바.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투자분석직의 임용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신설15.2.24)

1. 선임전문위원

- 가. 박사학위소지자로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관련 전문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 자격을 취득 후 9년 이상 당해분야 경력이 있는 자
- 라. 고위공무원에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 또는 관리한 경력이 있는 자
- 마. 해당분야에서 석사학위 취득후 9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후 12년 이상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바. 전문연구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한자로서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
- 사. 상기 각 목과 동등 이상의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전문위원

- 가.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6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후 9년 이상 업무경력이 있는 자
(개정16.10.26)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 자격을 취득 후 6년 이상 당해분야 경력이 있는 자
- 다.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6년 이상 수행 또는 관리한 경력이 있는 자
- 라.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신설 16.10.26)
- 마. 전문분석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한자로서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
- 바. 상기 각 목과 동등 이상의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전문분석원

- 가.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후 6년 이상 업무경력이 있는 자
(개정 16.10.26)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 자격을 취득 후 3년 이상 당해분야 경력이 있는 자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 후 7년 이상 당해분야 경력이 있는 자
- 라.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6년 이상 수행 또는 관리한 경력이 있는 자
- 마.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신설 16.10.26)
- 바. 분석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한자로서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신설 18.4.18)
- 사. 상기 각 목과 동등 이상의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분석원(신설 18.4.18)

- 가. 석사학위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대한 우수한 업무수행능력이 기대되는 자
- 나.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업무경력이 있는 자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 후 4년 이상 당해분야 경력이 있는 자
- 마.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해당업무를 3년 이상 수행 또는 관리한 경력이 있는 자
- 바.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사. 상기 각 목과 동등 이상의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1조 (임용권자) ① 직원은 정관 제2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원장이 임용한다.

(개정 85.4.11).

② 원장은 수석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직원과 관리직1급이상의 관리직원 및 전문직 가급 이상의 전문 직원 및 투자분석직 선임연구위원을 임용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개정 85.4.11, 92.2.1, 98.4.10, 00.1.1, 02.12.5, 04.4.23, 05.11.28, 15.2.24)

제11조의2 (시보 임용) ① 수석연구원급 이하, 전문직 나급이하, 투자분석직 전문위원급이하 또는 3급 이하 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기간 동안 시보로 임용하고, 시보기간의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임용한다.(개정 03.4.1, 15.2.24)

② 휴직 및 징계에 의한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03.4.1)

③ 시보임용기간중에 있는 자가 연구실적, 근무성적 등이 불량할 때에는 직권면직할 수 있다.(개정 03.4.1)

제12조 (직원의 임용) ① 직원의 임용은 임용계약(별지서식)에 의하여 행한다.(개정 86.8.1, 91.1.7, 00.1.1, 04.4.23, 09.12.22)

② 신규채용 직원의 초임 기간은 임용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3월 31일까지로 하고, 임용기간이 만료될 때 마다 임용기간만료자의 업무실적, 근무성적 등에 따라 3년 범위내에서 개인별로 기간을 차등 적용하여 재임용할 수 있으며, 재임용기간의 차등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에 별도로 정한다. 다만, 전문직원은 당해사업 또는 업무의 성격 및 기간에 따라 동향에서 정한 초임 기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03.4.1, 04.4.23, 09.12.22)

③ 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원 정원의 10% 범위내에서 정책연구의 품질향상을 위해 지방행정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 또는 타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파견받아 '정책연구협력관'으로 임용하여 정책연구 및 연구원 직제상의 임무를 부여하여 특정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자는 상근하여야 하며, 별도의 정원으로 관리한다. (신설 85.4.11, 개정 86.8.26, 92.1.8, 98.4.10, 06.12.29, 08.2.28, 09.2.27)

④ 원장은 지방행정 경험과 이론의 활용 또는 해외자료수집 등에 필요한 경우 초빙연구위원을 둘 수 있으며, 초빙연구위원 운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91.1.7, 03.4.1, 05.11.28)

⑤ 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임용기간 만료전의 연구직원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 85.4.11, 91.1.7).

제12조의2(개방형 공모직위)(신설 09.12.22) ① 연구원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연구원 외부나 내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방형 공모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③ 개방형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 (초임연봉의 확정) ① 임용에 있어서의 초임연봉은 기준1연봉으로 하되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여야 하며 이에 적용될 경력환산기준표는 별표5와 같다(개정 93.12.31, 96.3.7, 97.10.1, 99.3.31, 04.4.23, 09.12.22)

제13조의2 (승진시의 연봉확정)(개정 09.12.22) ① 직원이 상위직급으로 승진 시에는 승진되기 직전의 연봉에

별표6에 의한 승진가급액을 가산한다.(개정17.2.23)

② (본조신설 97.10.1, 개정 07.12.7, 09.12.22) <삭제17.2.23>

③ (본항신설 04.4. 23, 개정 15.2.24) <삭제17.2.23>

제13조의3 (연봉의 재확정) 직원의 연봉은 승진제한 또는 관련규정의 개폐시에 재확정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97.10.1, 개정 09.12.22)

제14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하지 못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4. 기타 직원으로 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제15조(임시직원의 임용) 원장은 연구용역사업 등의 필요에 따라 임시직원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임용할 수 있다.

제16조 (구비서류) ① 응시자는 입원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3.31)

② 1차 시험 또는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는 기한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3.31)

1. 채용신체검사서 1통
2. 학력증명서 1통(학위취득증명서 포함)
3. 주민등록표 초본 1통
4. 재정보증서(회계직 응시자)
5.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③ 회계관계업무직에 있는 자의 재정보증인은 재산세 납세액이 50,000원 이상인 자로한다. 재정보증서는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보증보험 한도액은 1,000만원으로 한다(개정 99.3.31).

제17조 (파견근무) ① 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국내외교육기관, 연구기관, 기타 필요한 기관에 파견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특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직원의 교육훈련 및 교관요원으로 선발한 경우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해당기관 기관장의 파견요청이 있을 때 원장이 결정한다(본항신설 90.3.1).

제17조의2 (승진) ① 직원의 승진은 제10조의 기준에 달한 자 중에서 근무성적과 능력이 우수한 자를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93.12.31, 99.3.31).

② 승진은 업무실적, 근무성적, 표창, 소속부서장의 의견을 종합한 근무평정에 의하되, 연구직원의 승진임용시는 최근 2년동안의 업무성적, 근무성적평정, 표창에 의한다(본조신설 90.3.1, 개정 98.1.1)

③ (신설 96.12.2, 삭제 02.3.6)

제17조의3 (삭제 09.12.22)

제17조의3 (연봉기준 승급) ① 매년 직원의 연봉산정 시 별표 7의 연봉가급을 지급한다. 다만 신규임용자는 임용되어 1년이 지난 후 도래하는 연봉산정 시 지급한다.(개정 17.2.23, 18.4.18)

② 연봉가급은 지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지급제한의 방법은 공무원보수규정의 호봉의 승급제한과 승급기간의 특

례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조항신설 16.1.1,개정 17.2.23))

제17조의4 (승진 제한)(개정 09.12.2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에서 제외한다.

- ①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중에 있는 자
- ②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가. 감 봉 12월
나. 견 책 6월
- ③ 동일 평정기간내에서 연구 및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된 자(본조신설 90.3.1)

제17조의5 (삭제 09.12.22)

제17조의6 (우수 직원의 특별승진)(신설 09.12.22) 3년이상 계속 근무 중인 직원 중 최근 2년 동안의 업무 성적 및 근무성적평정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거나 연구원 발전에 특별한 공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원장은 제 17조의2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 승진시킬 수 있다.

제4장 신분과 권익의 보장

제18조 (신분보장) 직원의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견에 반하여 면직당하지 아니한다.

제19조 (당연면직)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연면직 된다.

-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 2.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3. 형사사건으로 소추되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4.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경우
- 5. 정년에 달한 경우

제20조 (직권면직) ①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은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 1. 건강상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 2. 기구개편에 따라 인원감축의 필요가 있을 경우
- 3. 휴직기간이 만료하여도 복직하지 아니할 경우
- 4. 보수를 목적으로 타업에 종사하였을 경우
- 5.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부족하여 직위해제로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근무성적이나 능력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신설09.10.21)
- 6. 고의 또는 과실로 채용 비리 등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신설 18.4.18)
- 7.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신설 18.4.18)

②원장은 직권면직 시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으나 부정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는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신설 09.10.21, 개정 18.4.18)

제20조의2(직위해제)(신설09.10.21) ①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은 직위를 해제시킬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 기소된 자(약식명령제외)
- ② 제①항의 사유가 소멸되면 직위부여를 하여야 한다.
- ③ 1호직위해제자는 3개월의 범위내 대기명령을 시킬 수 있다.
- ④ 대기명령받은자에게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이나 연구과제 등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21조 (휴 직) ①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휴직을 명할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1개월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할 때
 2.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을 때
 3. 병역, 유학 및 기타 사유로 휴직을 원할 때
 4. 자녀(휴직 신청 당시 8세 미만인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본항신설 06.12.29, 개정 17.12.15)
 5.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본항신설 06.12.29)
- ②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원장은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22조 (휴직기간) 전조 제1항의 각호의 휴직은 다음과 같다.

1. 제1호 해당자 : 1년이내
2. 제2호 해당자 : 형 확정판결시까지
3. 제3호 해당자 : 복무 및 임무기간 만료시까지
4. 제4호 해당자 :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여성은 3년) 이내로 한다. (본항신설 06.12.29, 개정 17.12.15)
5. 제5호 해당자 :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본항신설 06.12.29)

제22조의 2 (특별연구휴직) ① 원장은 연구원에서 6년이상 근무한 연구직원이 국내외의 타 기관에서 전문지식을 연마하고자 하는 경우 1년이내의 기간 범위내에서 유급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의 휴직을 명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07.2.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에 필요한 내용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본조신설 05.12.30, 개정 07.2.28).

제23조 (정 년) ①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개정 85.4.11, 86.8.1, 92.2.1, 93.12.31, 08.2.28, 15.2.24, 16.1.1)

1. 연구직.전문직.투자분석직·1급 관리직 : 61세
2. 2급이하의 관리직·무기계약직 : 60세

②직원은 그 정년에 달한 해의 12월 31일에 당연히 퇴직한다.(신설 16.1.1,개정 17.2.23)

제23조의1 (임금피크제) 직원에 대하여 제23조에서 규정한 정년퇴직일 3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며, 임금피크의 굴절점 및 감액율은 보수규정에서 정한다.(조항신설 16.1.1)

제24조 (손해배상)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당원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본인 또는 재정보증인이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4조의2 (강 임) ① 원장은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폐직되거나 강등되어 과원이 된 때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직원을 강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직원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때에 제17 조의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 임용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직원은 본인의 경력과 연구원의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임용될 수 있다.(본조신설 92.5.2)

제5장 징 계

제25조 (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행한다.

1. 당연구원관련 법령 및 제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직무의 내용을 불문하고 연구원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고의 또는 중과실로서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때(신설09.10.21)

제26조 (징계의 종류와 효력) 징계는 다음에 의하여 행한다.

1. 파면 :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하며 퇴직금을 50/100을 감하여 지급한다.(개정 02.3.6)
2. 해임 : 그 직에서 즉시 해임하며 퇴직금은 전액 지급한다.(본호 신설 02.3.6)
3. 강등 : 1계급 아래로 계급을 내리고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신설09.10.21)
4.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중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본호 신설 02.3.6)
5.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개정 02.3.6)
- ② 6. 견책 : 시말서를 제출케 함으로써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개정 02.3.6)

제26조의2 (징계의 양정 등) ① 인사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직무 태도, 근무 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징계양정의 기준, 감경, 가중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량정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03.4.1)

제26조의3 (징계사유의 시효 및 관리) 징계의 시효 및 관리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바를 준용한다.(본조신설 02.3.6, 개정 03.4.1)

제26조의4 (자체감사) 원장은 자체감사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원으로 하여금 감사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02.3.6, 개정 03.4.1)

제27조 (재심청구)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통고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02.3.6)

제27조의2 (부당징계의 시정)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징계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즉시 해당직원에게 대하여 출근정지의 해제 또는 복직 조치를 하여야 하며 미지급 보수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02.3.6)

제28조 (진술권) 인사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02.3.6)

제29조 (통고) 원장은 징계처분된 사유와 결과를 당해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제6장 인사위원회

제30조 (구 성) ①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위원 8인으로 한다(개정 91. 1.7, 93.1.27, 95.3.6, 98.10.24, 15.11.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원장이 된다. (개정 85.4.11, 91.1.7, 92. 2.1, 93.1.27, 95.3.6, 96.3.7, 98.4.10, 98.10.24, 99.10.1. 01.3.12, 02.3.6, 02.12.5, 03.12.5, 05.5.19, 05.12.30, 06.12.29, 08.2.28, 08.5.13, 09.12.22. 10.4.27, 13.4.2, 13.5.23, 14.11.27, 15.11.5, 17.8.3)

1. 원내위원은 연구기획실장, 행정국장, 자치행정연구실장이 된다.

2. 원외위원 중 당연직위원으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지방재정정책관이 된다.

3. 원외위원 중 임의직위원으로 법관, 검사, 변호사, 공인노무사로 5년이상 근무한 사람, 대학에서 법학, 경영학,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사람으로 원장이 임명한다.

4. 원외 임의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본항신설 02.3.6, 개정 06.12.29)

⑤ 간사는 위원회의 서무와 제반회무 및 회의록을 정리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02.3.6)

제31조 (심의사항)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92.2.1, 93.5.17, 18.4.18).

1. 연구원내 인사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2. 직제및인사규정 제11조 2항에 해당하는 직원의 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정부포상 및 징계에 대한 사항

4. 원장이 필요에 따라 부의하는 사항

② <신설 93.5.17> <삭제 96.12.2>

제32조 (소집과 의결)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개최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으로 하며 참석위원 중 원외위원이 과반수 참여하여야 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5.11.5)

제33조 (회의비공개와 누설금지)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 (위원의 제척) 인사위원회의 부의사항이 어느 위원을 대상으로 될 때에는 그 위원은 위원회로부터 제척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97.10.1).

부 칙(1984.8.29)

이 규정은 이사회 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4.11)

(시행일) 이 규정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5.21)(개정 소→원)

(시행일) 이 규정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규정시행당시 재직중인 직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보며 종전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기능원중 운전원은 기능원 1종으로, 타자수는 기능원 2종으로 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86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86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88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에 의한 기구, 직종, 정원은 199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규정시행이전의 파견근무자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규정은 시행이전의 자료실, 전산실 운영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5.2)

1. (시행일) 이 규정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규정은 시행이전의 강임자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2.10.21)

(시행일) 이 규정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1.27)

(시행일) 이 규정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12.31)

(시행일) 이 규정은 공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4조 별표1, 별표3 및 제6조의 직제 및 정원 관계사항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3.6)

(시행일) 이 규정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3.7)

1. (시행일) 이 규정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규정시행이전의 제규정.규칙등의 연구부장(기획조정실장 포함), 기획조정실은 각각 연구기획부장, 연구기획부로 보며, 자료전산실은 각각 자료반, 전산반으로 본다. 또한, 제4조에 의한

초임급환산기준의 개정과 관련하여 종전의 한.영타자자격소지자는 이 규정에 의해 산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96.12.2)

(시행일) 이 규정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3.1)

1. (시행일) 이 규정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규정시행으로 이 규정시행이전에 방재안전연구분야의 연구직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해온 연구직원은 직제및인사규정 제20조 제2항에 의거 별도의 인사위원회 등을 거침없이 면직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정시행일부터 3개월이내의 퇴직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3. (기능원 감원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별표 3에 의한 기능원 2종 1명에 대한 정원감원은 이 규정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호봉획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력, 자격, 학위에 의한 초임호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호봉산정을 유지하되 경력환산에 의한 호봉은 이 규정시행과 동시에 다음과 같이 재획정한다.

가. 연구직원

1. 근속가봉제를 폐지한다.
2. 이중경력은 본인에게 유리한 1개 경력만을 인정한다.
3. 기타경력은 현재의 20%에서 10%를 인정한다.

나. 관리직원

1. 개인업체 근무경력을 폐지한다.
2. 공무원경력 9급이상 공무원 경력에 한하여 100%를 인정한다.
3. 기타경력중 내무부 산하단체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의 상근임시직 근무경력은 60%를 인정하고, 여타 임시직경력 60%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4. 기능원의 공무원 및 기타경력중 동일직종 임시직 상근경력에 한하여 90%로 환산부여하고, 법인업체 임시직 근무경력중 기능직 근무경력은 90%, 동일직종 임시직 상근경력 70%로 환산하여 부여한다.

② 이 규정 시행으로 인해 감액되는 개인별 보수액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197년도에 한하여 연말에 성과금 등으로 보전하게 할 수 있다.

부 칙(1998.1.1)

(시행일) 이 규정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2.2)

(시행일) 이 규정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4.10)

(시행일) 이 규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5.26)

(시행일) 이 규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24)

(시행일) 이 규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2.30)

(시행일) 이 규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3.31)

1. (시행일) 이 규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2. (채용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98년도 당원 구조조정에 의거 이미 채용중인 계약직원은 이 개정규정에 의해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99.10.1)

(시행일) 이 규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

(시행일) 이 규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16)

(시행일) 이 규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개정이전에 보직발령된 자는 이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00.12.30)

(시행일) 이 규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3.12)

(시행일) 이 규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3.6)

(시행일) 이 규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4.29)

(시행일) 이 규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5)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4.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1.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한 시보임용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2. 본 규정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2002년에 신규로 임용한 2인에 대해서는 임용기간 만료일을 2004년 3월 31일로 한다.

부 칙(2003.12.5)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4.2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5.19)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1.28)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30)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9)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2.28)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8.16)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 7)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규정시행 이전의 연구직 승진대상자의 호봉획정은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부 칙(2008.2.28)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2.18)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2.2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22)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01.29)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04.2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4.02)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5.23)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27)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18)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2.24)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1. 5)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2015년까지 미승급한 연봉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2015년까지 미승급하여 누적된 10기준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으며, 2016년부터 지급하는 연봉기준은 2015년까지 미승급한 최대 4기준과 2016년에 승급할 1기준을 합한 총 5기준 중 최대 3기준까지 승급한다.

부 칙(2016.10.26)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8.0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15)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4.18)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구표 (삭제, 01.3.12, 별도의 팀 운영규칙으로 신규제정)

<별표 2>(개정 00.1.1, 02.3.6, 02.12.5, 04.4.23, 08.2.28, 09.2.27, 14.12.18, 15.2.24, 17.12.15, 18.4.18)

직 종 표

직 군	직 류	계 급	비 고
원 장			
연 구 직		선임연구위원	
		연 구 위 원	
		수석연구원	
		연 구 원	
관리직	사 무 원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 가	운전, 청사 시설 및 설비 관리, 일반 행정
		5 급 - 나	경비(반장)
		5 급 - 다	경비, 청소
전 문 직		가 급	
		나 급	
		다 급	
투자분석직		선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문분석원	
		분석원	

<별표 3>(개정 98.12.30, 02.4.29, 02.12.5, 04.4.23, 05.5.19, 06.12.29, 07.8.16, 08.2.28, 08.12.18, 09.2.27, 10.1.29, 14.12.18, 15.2.24, 16.10.26, 18.4.18)

정 원 표

구 분	급 별	정 원	비 고	
합 계		97		
원 장		1		
연구직	소 계		58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58	
		연구위원		
		수석연구원 ·연구원		
관리직	소 계		18	
	사무관리원	사무원	1 급	18
			2 급	
			3 급	
			4 급	
			5급-가	
			5급-나	
전문직	소 계		2	
	전문원	가 급	2	
		나 급		
다 급				
투자분석직	소 계		18	
	투자분석원	선임전문위원	18	
		전문위원		
		전문분석원		
분석원				

<별표 4>

초임호봉기준표(삭제 97.10.1)

<별표 5>

경력환산기준표

(개정 97.10.1, 00.1.1, 02.3.6, 04.4.23, 09.2.27, 13.4.2, 14.11.27, 15.2.24, 17.8.3, 18.4.18)

구분	경력사항	경력인정 비율(%)
연구직	선임 연구 위원	1.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 100 2. 4년제 대학 교수 또는 연구기관 선임연구위원급 경력 100 3. 3급이상 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 100
	연구 위원	1. 병역법에 의한 의무 복무기간 100 2. 4년제 대학 조교수이상 또는 연구기관 연구위원급 경력 100 3. 4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 100
	수석 연구 위원	1.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 100 2. 연구기관 수석연구위원급이상 경력 100 3. 5급이상 공무원으로 8년이상 근무한 경력 100
	연구 위원	1.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 100 2. 연구기관 책임연구위원급 이상경력 100 3.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 100
관리직 (1급 ~ 4급)	1.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 100 2. 공무원경력	100
	○ 정규직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의한 호봉산정 경력)	100
	○ 상근임시직	50
	3. 행정안전부 산하단체기관, 정부출연·투자기관 - 정규직(동일직급이상) 100 - 정규직(동일직급미만) 80 - 상근임시직 50	
4. 법인업체 - 정규직(동일직종) 50		
관리직 (5급-가, 5급-나)	1.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 100 2. 공무원경력	100
	○ 기능직이상	100
	○ 상근임시직(동일직종)	50
	3. 행정안전부 산하단체기관, 정부출연·투자기관 - 기능직이상 100 - 상근임시직(동일직종) 50	
	4. 법인업체 - 정규직(동일직종) 50	
5. 기타 자격경력 - 임용예정분야 관련자격중 운전, 전기, 보일러, 통신, 위험물취급자격이 있는 자로서 개인업체 근무경력 50		
전문직 (가~다급) 투자분석 직(선임전 문위원,전 문위원,분 석원)	1.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 100 2. 임용자격기준에 소요되는 경력년수를 초과하는 동일직종경력에 대하여	
	○공무원경력 - 정규직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의한 호봉산정 경력) 100 - 상근임시직 50	
	○행정안전부 산하단체기관, 정부출연,투자기관 - 정규직 (우리연구원 계약직은 정규직으로 인정) 100 - 상근임시직 50	
	3.법인업체 - 정규직 50 ※총 경력에서 임용필요경력을 공제할 때에는 경력환산율이 낮은 경력부터 공제하며, 승진시에도 동 경력환산기준에 의거 재확정함	
* 연구기관 또는 출연기관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임		

<별표 6>

승진가급

구 분	승진가급액
연구직	795만원
투자분석직, 전문직	761만원
관리직	710만원

<별표 7> (개정 18.4.18)

연봉가급

○ 연구직

(단위: 천원)

직급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수석연구원	연구원
연봉가급	1,992	1,736	1,807	1,278

○ 투자분석직·전문직

(단위: 천원)

직급	선임전문위원·가급	전문위원·나급	전문분석원·다급	분석원
연봉가급	1,759	1,453	1,283	1,310

○ 관리직

(단위: 천원)

직급	1급	2급	3급	4급	5급-가	5급-나
연봉가급	1,200	1,053	842	737	703	672

<별표서식>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임용계약서

임 용 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피임용자 : 생년월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만 _____ 재)

성 명 _____

위 쌍방은 다음과 같이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1. 임용기간은 20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부터 20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까지 (_____ 년간)으로 하고 임용기간이 만료 되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직제 및 인사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임용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피임용자의 초임보수는 월 _____ 원으로 하며 임용후의 승급은 연구원직제및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피임용자의 임용계약시 직위는 _____로 한다.

4. 피임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연구원의 이익을 위하여 연구원 제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최선을 다하며 맡은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재직또는 퇴직후에는 연구원에서 지득한 비밀사항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다. 재직중에는 연구원장의 사전승인없이 대외활동이나 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라. 피임용자가 임의퇴직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행중이던 연구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당해 과제기간 중 봉급을 포함한 금전적으로 지급된 일체의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단, 과제의 조기완료, 또는 퇴직후 무보수수행완료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임 용 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

피임용자 : 주 소

성 명 :

☞

입 회 자 : 주 소

성 명 :